

#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484호 2023년 8월 11일(금)

## 규 칙

- 속초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 2
- 속초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 4

## 고 시

-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변경·폐지)에 관한 고시 ..... 8

## 입법예고

- 속초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1

속초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8월 11일

## 속 초 시 장



속초시 규칙 제1553호

### 속초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속초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동별의 총 및 영랑동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동 별	통	반	비 고
총	249	1,223	
영랑동	15	73	

별표 중 영랑동의 제14통란 다음에 제15통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명칭			구역			
행정동	통	반	법정동	번지	세부구역	
영랑동	제 15 통	제 1 반	장사동		속초영랑호엘크루라테라	101동~104동
		제 2 반	장사동		속초영랑호엘크루라테라	105동~108동
		제 3 반	장사동		속초영랑호엘크루라테라	109동, 114동~115동
		제 4 반	장사동		속초영랑호엘크루라테라	110동~113동 아파트내 상가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전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8월 11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규칙 제1554호

속초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속초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속초시 청소년복지심  
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속초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  
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때에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할 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 담당 장학관, 속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속초시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5조(임기)** ① 시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기피 등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 관련 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3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속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통합사례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 대응 등 통합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할 때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0조(회의록)**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통합사례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회의에 출석한 관계자에게는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개인정보나 보호 대상 청소년의 생활실태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로 본다.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12. 10.>

고시 제 2023 - 1 호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변경·폐지)에 관한 고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변경·폐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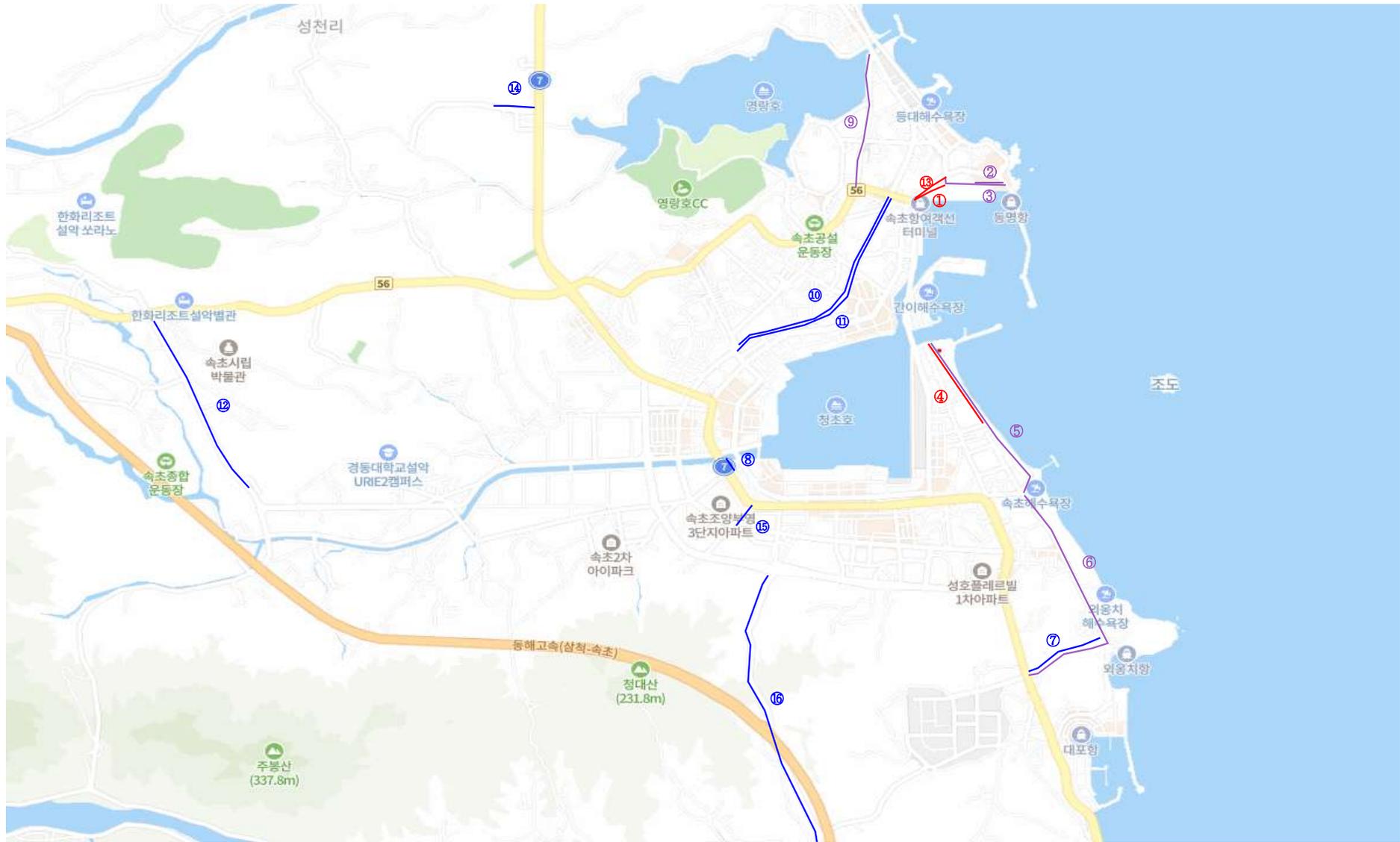
2023년 8월 10일

속 초 시 장 인

노 선 명	노선번호	자전거도로의 종류	도로관리청	도로구간		총길이 (km)	자전거도로 너비(m)	주요 경유지	지정(변경·폐지) 사유	비고
				기점	종점					
동명항길 1	-	비분리형 겸용도로	속초시청 건설과	동명동 383-2	동명동 53-24	0.53	2.4	여객터미널	항만구역 주정차로 인한 자전거도로 이용 불가로 폐지	폐지
동명항길 2R	소로 1-74	우선도로	속초시청 건설과	동명동 53-19	동명동 1-243	0.18	3.3	동명항	자전거도로 실측 결과 총길이 변경	변경
동명항길 2L	소로 1-74	우선도로	속초시청 건설과	동명동 1-243	동명동 53-19	0.18	3.3	동명항	자전거도로 실측 결과 총길이 및 자전거 도로의 종류 변경	변경
		비분리형 겸용도로	속초시청 건설과	동명동 53-19	동명동 81-1	0.24	2.0	해양경찰서		
청호해안길 R	중로 2-11	우선도로	속초시청 건설과	청호동 1334	조양동 1449-3	0.71	3.0	속초해변	도로확장 및 분리형겸용도로 구성에 따른 우선도로 폐지	폐지
청호해안길 L	중로 2-11	분리형 겸용도로	속초시청 건설과	조양동 1449-3	청호동 550-3	1.40	1.5	속초해변	도로확장 및 분리형겸용도로 구성에 따른 우선도로 → 분리형겸용도로 변경	변경
해오름로 1	중로 1-25	분리형 겸용도로	속초시청 건설과	조양동 1450-4	대포동 666-4	1.00	1.5	외용치해변	도로확장 및 분리형겸용도로 구성에 따른 도로의 종류 변경	변경
		비분리형 겸용도로	속초시청 건설과	대포동 666-4	대포동 479-6	0.86	1.2	외용치마을		
해오름로 2	중로 1-25	비분리형 겸용도로	속초시청 건설과	대포동 677	대포동 479-6	0.60	3.0	외용치마을	자전거도로 미지정 노선 추가 지정	신규

동해대로 2L	대로 1-2	분리형 겸용도로	속초시청 건설과	조양동 634-89	조양동 633-1	0.15	1.5	고용복지센 터	자전거도로 미지정 노선 추가 지정	신규
번영로	중로 1-2	분리형 겸용도로	속초시청 건설과	영랑동 149-49	동명동 565-41	1.04	1.4~2.0	속초의료원	자전거도로 실측 결과 누락구간(영랑교~ 속초의료원) 추가 반영으로 총길이 변경	변경
수복로 R	중로 1-2	분리형 겸용도로	속초시청 건설과	교동 658-65	동명동 450-38 1	1.78	1.4~2.2	전통시장	자전거도로 미지정 노선 추가 지정	신규
수복로 L	중로 1-2	분리형 겸용도로	속초시청 건설과	동명동 494-16	교동 650-22	1.77	1.4~2.2	전통시장	자전거도로 미지정 노선 추가 지정	신규
관광로	중로 1-9	비분리형 겸용도로	속초시청 건설과	노학동 1006-8	노학동 972-70	1.60	1.2~2.2	척산온천	자전거도로 미지정 노선 추가 지정	신규
중앙로 2	중로 1-3	분리형 겸용도로	속초시청 건설과	동명동 53-24	동명동 383-2	0.26	1.5	수복탑	동일구간 타노선(중앙로 1R)에 중복기재 되어 폐지	폐지
동해대로 4511번길 L	중로 1-19	분리형 겸용도로	속초시청 건설과	장사동 286-6	장사동 395-29	0.35	1.2	청해학교	자전거도로 미지정 노선 추가 지정	신규
청대로 204번길	중로 2-5	분리형 겸용도로	속초시청 건설과	조양동 1501	조양동 1500-1	0.20	1.6	부영 5단지	자전거도로 미지정 노선 추가 지정	신규
떡밭재로	중로 1-16	분리형 겸용도로	속초시청 건설과	조양동 산256- 11	조양동 817	2.52	1.75	영광정막국 수	자전거도로 미지정 노선 추가 지정	신규

○ 자전거도로 노선 지정(변경, 폐지, 신규) 위치도



## 속초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11일

속 초 시 장

### 1. 자치법규명: 「속초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개정이유

- 「지역보건법」 개정 시행('23. 3. 28.)으로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시 보건의료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지역보건법」 제22조(정보의 과기) 제3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안 제3조제1항)

나. 신설 조항 추가에 따른 기존 인용조문 정비(안 제3조제2~3항 및 제4조)

다.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 조항 신설(안 제5조)

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조항 신설(안 제6조)

#### 4. 자치법규안: 붙임

####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8. 31.(목)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보건위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1) 주 소 : 우)24855 강원도 속초시 수복로 36  
속초시보건소 보건위생정책과 의약관리팀
- 2) 연 락 처 : 전화(033-639-2920), 팩스(033-632-1814)
- 3) 전자문서 : ryang1327@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문서, 직접방문 등

####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보건소 보건위생정책과 의약관리팀(033-639-29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 조례 제 호

### 속초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조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사람  
제4조 중 “제34조제1항”을 “제3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시장은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  
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과태료 부과 기준

(제4조 관련)

(단위 : 천원)

근거법령	위 반 사 항	위반 횟수별 부과금액		
		1차	2차	3차
「지역보건법」 제34조	1. 「지역보건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10,000	20,000	30,000
	2. 「지역보건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1,000	2,000	3,000
	3. 「지역보건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명칭(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을 사용한 자	1,000	2,000	3,000

주석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각 위반행위별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단, 4차 위반행위부터는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부과대상) 「지역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lt;신 설&gt;</p> <p>1. · 2. (생 략)</p> <p>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 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제3조(부과대상) ----- ----- ----- -----.</p> <p>1.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과기하지 아니한 사람</p> <p>2. ·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p> <p>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 34조제1항 및 제2항 ----- -----.</p> <p>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시장은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p> <p>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p>

현행					개정안				
<b>[별표]</b> <b>과태료 부과 기준</b> (제4조 관련) (단위 : 천원)					<b>[별표]</b> <b>과태료 부과 기준</b> (제4조 관련) (단위 : 천원)				
근거법령	위 반 사 항	위반 횟수별 부과금액			근거법령	위 반 사 항	위반 횟수별 부과금액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지역보건법」 제34조	1. 「지역보건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사람	1,000	2,000	3,000	「지역보건법」 제34조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의 규 정을 위반하여 정 보 또는 자료를 파 기하지 아니한 자	10,000	20,000	30,000
	2. 「지역보건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건소등 으로 동일명칭을 사용한 사람	1,000	2,000	3,000		2. 「지역보건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1,000	2,000	3,000
				3. 「지역보건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명칭 (보건소, 보건의료 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을 사용한 자		1,000	2,000	3,000	